

서울동부지방법원 2024. 5. 29 선고 2023나2230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서울동부지방법원 2024. 5. 29 선고 2023나22301 판결

서울동부지방법원 2023. 1. 31 선고 2021가단140242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가람

피고, 피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

담당변호사 윤승현

변론종결 2024. 4. 17.

판결선고 2024. 5. 29.

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. 1. 31. 선고 2021가단140242 판결

주문

-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-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주위적으로, 피고는 원고에게 6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. 8. 30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 예비적으로, 피고와 C 사이에 2019. 6. 21. 체결된 증여계약을 60,000,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6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이에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황중연, 판사 김경년, 판사 이종욱